

뿌리기업 평가 선정증

- 선정번호: 제 호
- 기 업 명:
- 생년월일:
- 소 재 지:
-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받은 연도:
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
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업 평가
로 선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